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7.12.1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준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7. 11.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7. 11. 28.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지방기금의 의의

-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수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 중 「지방공기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 기금을 의미
- 기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실체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17년말 조성액 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감 ⑤=④-①
		수입 ②	지출 ③		
합계 (5개)	11,473,465	230,063	362,260	11,341,268	△132,197
식품진흥기금	66,501	18,260	7,260	77,501	1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6,455,245	96,750	240,000	6,311,995	△143,250
사회복지기금	3,363,442	91,730	88,000	3,367,172	3,730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00,446	7,006	7,000	500,452	6
체육진흥기금	1,087,831	16,317	20,000	1,084,148	△3,683

5. 검토의견

▣ 식품진흥기금<민원봉사실>[p23]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식품위생 및 음식 문화 개선에 기여
- 주요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체 추진과 우수(모범음식점 등)업소 지원, 식중독 예방 홍보 등
-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천384만2천원이 증액된 8천476만1천원으로 편성

- 총 예산 84,761천원 중 예치금 회수 예산이 66,50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78.45%로 실질적인 수입은 세외수입 11,000천원, 보조금 7,260천원 도합 18,260천원으로
- 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재원조성이 너무 열악한 실정임
- 2018년도 세출 총 예산은 84,761천원 중 예치금이 77,501천원으로 91.43%로 순수 목적사업은 도비 보조금 7,260천원만 편성되어 기금 목적에 실효성이 없음
-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증액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되며, 한 예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방법과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식품위생 관련 예산을 기금 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등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육성기금<기업지원과>[p31]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재원
-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01만4천원이 감액된 65억5,199만5천원으로 편성
- 총 예산 6,551,995천원 중 예치금 회수 예산이 6,455,24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8.52%로 실질적인 수입은 이자수입 96,750천원이다
- 내년도 기금 목적사업에 이차보전금 240,000천원으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p37]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저소득 주민의 창업자금과 자활기업 지원 등으로 자활자립 도모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에 있음
- 재원은 군 출연금, 기탁금,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
-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6천281만6천원이 감액된 34억5,517만2천원으로 편성
- 총 예산 3,455,172천원 중 예치금 회수 예산이 3,363,44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7.34%로 실질적인 수입은 세외수입 91,730천원으로 2.66%에 불과하다
- 기금사업의 예치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 확대와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 확대에 기금사업 목적에 노력이 필요함

▣ 아림예술제진흥기금<문화관광과>[p49]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47여년 동안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거창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
-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행사 잉여금 등

-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만6천원이 감액된 5억745만2천원으로 편성
- 총 예산 507,452천원 중 예치금 회수 예산이 500,44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8.61%로 실질적인 수입은 이자수입 7,006천원으로 1.39%에 불과하다
- 내년도 기금 목적사업으로 아림예술제 행사 등 지원에 7,000천원을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아림예술제 관련 예산을 기금 사업에 편성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체육진흥기금<체육시설사업소>[p55]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사업의 목표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
- 재원은 보조금, 국가 및 군 출연금, 체육시설 임대 및 사용료,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7만3천원이 감액된 11억414만8천원으로 편성
- 총 예산 1,104,148천원 중 예치금 회수 예산이 1,087,83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8.52%로 실질적인 수입은 이자수입 16,317천원으로 1.48%에 불과하다
- 내년도 기금 목적사업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 지원에 20,000천원으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검토되었음.

▣ 총괄 검토의견

-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 2018년도 총 규모는 113억4,126만 8천원이며 수입은 2억3,006만3천원, 지출은 3억6,226만원이다
- 기금 목적사업 지출 금액이 전체 예산의 3.19%로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 매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며
- 실효성이 없는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 폐지하고 혹 기금 목적사업의 성과가 높고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기금은 연장하여 존속하는 방안도 검토
- 동일한 사업이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에 산재해 있는 사업은 효율성이 높은 회계로 합쳐서 운용 등 검토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원봉사실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1명

나.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8.06)

제 2조 (기금의 설치)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8.06)

제2조의2(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2.8.06)

제 3조 (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8.0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8.06)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용도)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8.06)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재원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2.8.06)

제 5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2.8.06)<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기금운용관 : 기업지원과장<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담당주사<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

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6조 (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단, 위원회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8.0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8.0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7조 (회계)기금의 경리절차는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 8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재원(이하"자금"이라 한다)을 용자받은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개정 2012.8.06)

제 9 조(용자대상업체)제8조의 용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로 한다.(개정 2012.8.06)

제 10 조 (용자금의 용도)① 군수가 용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용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개정 2012.8.06)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 (용자계획의 공고 등)① 군수는 매년 초에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용자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조 (용자금의 대출)① 군수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용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 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자금을 대출한다.(개정 2012.8.06)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용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제 13 조 (용자조건)① 용자금의 용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8.06)

② 용자금의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총액 3억원의 범위에서 개별업체 한도는 규칙

으로 정한다.(개정 2012.8.06)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제1항의 용도에 따라 용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 14 조 (용자금의 금리 등)①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용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8.06)

③ 제2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15 조 (용자금의 상환)① 용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2.8.06)

1.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용자금의 대출원리금 회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다.

제 16 조 (변경사항 통보)용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제 17 조 (결산 및 보고 등)① 취급금융기관은 용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 및 용자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 및 용자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8.06)

제 18 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지원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5.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지원은 제외한다.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란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③ 자활계정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한도액

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 5천만원

나. 개인: 2천만원

2. 용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양성평등계정
3. 자활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

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노인 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아림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림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의 출연금
4.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림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림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8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군수는 위촉 위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411호 제정 2017.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따라 수립된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주사가

된다.(타조례 개정 2017.11.29)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된다.(타조례 개정 2017.11.29)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